**특별자문 약정서**

에스비아이성장전략M&A펀드

법무법인 이후

**특별자문 약정서**

에스비아이성장전략M&A펀드 (이하 “갑”이라 한다)는 2017년 9월 [ ]일 법무법인 이후(이하 “을”이라 한다)에게 “갑”이 추진하는 법률실사 및 투자자문업무를 의뢰함에 따라 양 당사자는 자문에 관한 제반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.

**다 음**

**제1조(자문용역의 내용)**

“을”이 “갑”에게 제공할 자문용역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.

1. “갑”이 추진하는 투자 관련 법률적 절차 및 쟁점에 대한 검토
2. “갑”이 추진하는 투자 관련 대상회사에 대한 법률실사 및 법률실사 보고서 작성(영문계약서 등 검토를 포함한다)
3. 기타 본건 거래와 관련하여 “갑”이 요청하는 위 1호의 계약서 검토와 관련된 법률자문 및 법률의견서 제출
4. “갑”이 추진하는 대상회사에 대한 투자 관련한 투자조건 검토 및 투자계약서의 작성
5. 위 1호 내지 4호의 범위를 초과하는 매도 관련 법률적 자문은 “갑”과 “을”이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.

**제2조(자문용역 수수료 및 용역기간)**

1. 자문용역 수수료는 제1조의 업무와 관련하여 자문료는 30,000,000원(부가세 별도)으로 한다.
2. 용역기간은 본 약정 체결일로부터 제1조의 업무가 종료할 때까지로 한다.
3. 본 계약 체결시 또는 본 계약에 따른 업무 종결시에 “갑”은 자문용역 수수료 금 30,000,000원(부가세 별도)을 지급한다.

(국민은행 **654501-04-009838**, 예금주: 법무법인 이후)

**제3조(비경상비용)**

제2조의 자문용역수수료 이외에 기타 비경상비용(예컨데 장기출장비, 외부 전문가의 고용 등)의 지출이 예상되는 경우 “을”은 “갑”의 사전 동의 하에 지출하며, 이 경우 “갑”이 “을”에게 관련비용을 보상한다.

**제4조(비밀유지)**

“갑”과 “을” 상호 서면동의 없이는 본 용역의 수행과정에서 획득한 상호 비밀이나 관련정보 등 상대방의 고유재산에 해당되는 사항을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. 단, 관련법규나 정부 또는 규제기관에 의해 요구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**제5조(상호협조)**

1. 대상회사는 “을”이 자문용역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“을”이 요청하는 용역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“을”에게 전달하여야 한다.
2. 대상회사는 필요한 경우 “갑”이 보유하고 있는 유, 무형자산, 각종 내부정보 및 외부정보, 인력을 제공하여 “을”이 자신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.

**제6조(면책)**

“갑”은 “을” 의 고의 또는 악의의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야기되지 않는 한, “을”이 “갑”에게 자문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한 행위들로부터 발생하거나 근거되어 청구되는 모든 책임 및 손해로부터 “을”을 면책한다.

**제7조(기타)**

1. “을”은 본 자문을 수행하는 주된 담당변호사로 **이종건, 백은성, 류권영, 권낙현, 인주형, 송용준**을 지정한다. 다만, 사안에 따라 필요하다면 “을” 소속의 모든 변호사가 자문활동에 응할 수 있다.
2. “갑”과 “을”은 본 약정을 신의에 입각하여 성실하게 수행하고 장기적으로는 서로의 발전과 우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한다.
3. 본 약정의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2부를 작성하여 각 1부씩 소지하기로 한다.

2017년 9월 일

“갑” **에스비아이성장전략M&A펀드**

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09 NC타워 14층

업무집행조합원 에스비아이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(인) 전화 Office : +82-2-2139-9235    이메일: sykim@sbigroup.co.kr

환급계좌

(법인 담당자 : 김성연 팀장님 )

“을” **법무법인 이후**

대표변호사 이 종 건 (인)

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201 20층 (역삼동, 아주빌딩)

Tel. 02 567 3071 Fax. 02 567 3075

사업자등록번호: 220-88-69969